

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983.3.1		16	2015.2.3	
2	1985.2.6		17	2016.10.28	
3	1995.8.1		18	2017.6.19	
4	1996.3.1		19	2018.3.1	
5	1997.3.1		20	2019.8.26	
6	1997.9.1		21	2020.3.9	
7	2004.3.1		22	2021.3.29	
8	208.8.13		23	2021.4.26	
9	2009.6.1		24	2023.1.16	
10	2009.11.13		25	2023.12.18	
11	2010.10.8		26		
12	2012.1.31		27		
13	2012.10.31		28		
14	2013.7.30		29		
15	2014.8.6		30		

강의료 지급 규정

[종전 강사료지급규정에서 강의료지급규정으로 명칭변경 2019.8.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 등에 대한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6.>

제2조 (강의구분) 본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강의, 실습강의, 특별강의 및 사이버강의로 구분한다. <개정 2008.8.13.>

1. 일반강의는 평상수업을 말한다.
2. 실습강의는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수업을 말한다.
3. 특별강의는 비정규학기의 강의 또는 본 대학교의 명의로 교내 및 교외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적 수업을 말한다.
4. 사이버강의 : 인터넷 환경 등의 정보 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교육 정보를 웹 형태로 저장, 관리, 유통하고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한 시간에 가능한 장소에서 영상·음향·문서 등으로 제공되는 수업을 말한다.<신설 2008.8.13>

제3조 (책임시간) 전임교원의 책임시간과 보직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3.>

1.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6.10.28., 2017.6.19.>
 - 가. 전임교원은 대학원 강의를 포함하여 학기별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하여야 하며, 이 때 학부 강의는 6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전임교원이 당해학기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시간은 다음 학기에 보충하여야 한다.
 - 다. 전임교원이 당해학기 학부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시간은 동일 학년도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부족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강의시간은 초과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마. 전임교원의 주당 담당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어학담당 외국인교원 포함)은 예외로 하며, 그 밖에 교과운영 등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2. 보직교원 등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2.3., 2018.3.1.>
3. 정년을 1년 남겨둔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책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3.1.>

4. 비정년트랙교원의 책임시간은 비정년트랙교원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08.8.13.><개정 2012.1.31., 2016.10.28.>
5. 대학원을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의 강의시간을 책임시간에 포함할 지 여부는 강의료 지급 자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1., 2023.12.18>
6. 신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최초 임용 후 1년 이내에 학부(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3시간까지 감면될 수 있다. <신설 2008.8.13., 2010.10.8.>
7.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책임시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감면될 수 있다. <신설 2008.8.13.>

제 2 장 강사료 산출 및 지급

제4조 (강의단위) 강의단위는 수강인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8.13., 2010.10.8.>

1. 소단위 : 60명 이하
2. 중단위 : 61명 이상 120명 이하
3. 대단위 : 121명 이상

제5조 (강의료 지급) ① 강의료는 다음 각 호 1의 초과 강의료, 시간 강의료 및 계약학과 강의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강의료 지급 대상이 되는 과목 및 강의시간은 매 학기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정규 시간표에 배정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8.8.13., 2014.8.6., 2019.8.26.>

1. 초과 강의료는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외의 초과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의료 <개정 2019.8.26.>
 2. 시간 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의거 해당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개정 2014.8.6., 2019.8.26.>
 3. 계약학과 강의료는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에서 개설한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신설 2008.8.13.><개정 2009.6.1., 2019.8.26.>
- ② 제4조의 중단위 이상 수강과목은 수업개시 4주선을 기준으로 하며, 수강인원 61명부터 1명 초과단위로 시간당 강의료의 1%를 추가 지급하되 8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교과목의 특성 상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8.13., 2010.10.8., 2018.3.1., 2019.8.26.>
- ③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과 강사료를 지급하며, 학년도 기준으로 2학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년 실시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1학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3, 2009.6.1., 2010.10.8., 2017.6.19., 2019.8.26.>
1.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지급 시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6., 2021.3.29>
 2. <개정 2019.8.26.> <삭제 2021.3.29>
 3.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어학담당 외국인교원 포함)에게는 초과시간 전부에 대하여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6.>

4.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인력양성사업 강의의 초과시수는 총장 허가하에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5. <신설 2021.3.29.>, <삭제 2023.12.18.>
- ④ 시험기간,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한 휴강일 때에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 ⑤ <개정 2008.8.13., 2016.10.28., 2019.8.26.> <항 삭제 2023.1.16.>
- ⑥ 삭제
- ⑦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6.>
- ⑧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전임교원이 당해학기 학부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해학기 초과 강의료 지급을 보류하고, 동일 학년도 내에 미충족시간을 보충했을 때 지급한다. <신설 2017.6.19., 개정 2019.8.26.>

제6조 (강의료 산출) 강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6.>

- ① 실습강의 강의료는 2시간을 일반강의의 1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다만, 특정 교육 내용에 대한 실습강의는 일반강의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6.>
- ② 전 1호의 단서의 경우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수는 일반강의로 계산하고,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도 일반강의의 시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8.26.>
- ③ 조종실기 지상학습 시간은 일반강의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6시간까지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8.8.13., 2019.8.26.>
- ④ 강의료는 주 단위로 배정된 강의 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8.13., 2016.10.28., 2019.8.26.>
- ⑤ 시간 강의료는 당해년도 강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8.26.>
- ⑥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료 산정은 초과 강의료가 높은 개설단위의 시간을 우선으로 하고, 개설단위간 강의료가 동일한 경우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학부 순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8.8.13.><개정 2016.10.28., 2017.6.19., 2019.8.26.>

제7조 (지급일) 강의료 지급일은 익월 5일에 정기로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변경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제 3 장 특별강의료

제8조 (계절수업의 강의료) ① 전임교원의 계절수업 강의료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8.8.13., 2019.8.26.>

- ②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정규학기 중 강의료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08.8.13., 2019.8.26.>

제9조 (방학 중 및 일과시간외 수업의 강의료) ① 정규학기 중의 수업의 연장으로 방학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기 및 실습교육 등에 대한 강의료는 정규학기의 일반 강의 강의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08.8.13., 2019.8.26.>

- ② 학부(과)의 주관으로 개설하는 선수과목 강의 등 방학 중 또는 일과시간 외에 개설되는 강의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규 학기의 일반강의 강의료 기준을 적용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8.13., 2019.8.26.>

제10조 (부속기관의 강의료) ① 본 대학교 부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서 강사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구분된다. 단, 비행교육원의 조종실기교수 등 비행교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8.13, 2009. 11.13, 2013.7.30., 2019.8.26.>

- ② 강의료는 당해년도 강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신설 2009. 11.13., 개정 2019.8.26.>

제11조 삭 제 <2008.8.13.>

제12조 (특별 강의료) ① 특별초빙 강의료는 본 대학교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단기강좌 혹은 특별강의를 위해 초빙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로서 당해년도 강의료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개정 2016.10.28., 2019.8.26.>

- ② 제1항의 강사 중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는 특급강사로 분류하며 특급강사의 강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8.13., 2009.11.13., 2016.10.28., 2019.8.26.>
- ③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특별강의를 수행할 경우 특별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8.13.> <개정 2019.8.26.>
- ④ 본 대학교에 조종 실기교수 등의 직분으로 근무하는 자가 학부(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의 시수에 대하여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8.13., 개정 2019.8.26.>
- ⑤ 위탁사업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신설 2009. 11.1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제3조제3호에 의거 책임시수가 감면된 교원은 주당 12시간(책임시간 포함)까지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단, 개정된 조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단 개정된 조항은 2011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19일 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개정 2009.6.1, 2010.10.8., 2013.7.30., 2015.2.3., 2016.10.28., 2017.6.19., 2018.3.1., 2020.3.9., 2021.3.29., 2021.4.26., 2023.1.16.>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구분		책임 시간	학부책임 강의시간
보직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행정처장	3시간	연간3시간
	학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5시간	3시간
	부학부장, 학과장, <삭제 2021.3.29.>	6시간	
	부속기관장(연구소 및 센터 제외)***, CTL센터장 및 부센터장	6시간	
	학부 전공주임교수, <삭제 2021.3.29.>,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 한국어교육원 주임교수	7시간	
정년 트랙	일반교수	9시간	6시간
	정년퇴직 직전 2개 학기 해당 교원	6시간	3시간
	간접비 수주 등 연구실적 우수 교원 **	6시간 ~ 3시간	3시간 ~ 연간3시간
	과제 협약 등에 따라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전임교원 (과제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른 책임시간 감면을 총장이 승인한 경우)	7.5시간 6시간	4.5시간 3시간
비정년 트랙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따로 정함	
	교육중점교수		
	교육중점교수(어학담당 외국인교원)		

※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책임시간이 학기별 주당 3시간이하인 교원의 학부 책임강의시간은 연간 주당 3시간임

※※ 연구실적이 우수하여 학교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여실적에 따라 최대 주당 6시간까지 감면 가능함

※※※ 부속기관장 중 국제교류원장, 평생교육원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부속기관장을 추가로 겸보하여 3곳 이상의 부속기관장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처장의 책임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 별표 3 > <신설 2009. 11.13><개정 2012.10.31., 2013.7.30.>

부속기관 강사의 구분

구분	대 상
일반(가)	◦ 특별초빙강사로서 ‘일반(나) 및 일반(다)’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나)	◦ 항공관련 안전관리 보안과정 프로그램 교육강사 ◦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일반(다)	◦ 기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강사 ◦ 본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

< 별표 4 > <신설 2009.11.13>

특급강사의 구분

구 분	대 상
특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특급(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장·차관(급), 국회의원, 대학총장 ◦ 대기업체 대표(연수원장, 연구소장 포함) ◦ 국영기업체장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특급(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예술인, 종교인 및 언론인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 연구소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